

Worth Street Rules중의 Specification G

(카드사생지용. 1934. 2. 7시행)

[본고는 American cotton Manufacturers Institute.Inc., The Association of Cotton Textile Merchants of New York 등 미국의 12개 주요섬유업자단체가 승인, 공포한 “Worth Street rules(1960개정)” 중에서 그 일부를 초택한 것이다. 이들 규칙은 면섬유제품류의 거래에 있어 만장일치의 동의와 거의 일반적인 통용을 거쳐 거래절차상의 표준관례 및 관습으로 인정되기에 이른 것으로, 앞으로 지면이 허락하는대로 그 중요내용을 뽑아 소개하고자 한다]

허용범위, 결함한도 및 배상액

마를 단위로 한 과부족량이 Bale당 평균마수의 1/2미만이면 그 계약은 정당하게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수량이 10,000마 이상인 때의 허용범위는 계약량의 $\pm 5\%$ 를 초과하지 못한다.

매필의 양단말 2마되는 부분의 폭은 규정치에 근사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부분의 허용차는 -3% , $+4\%$ 를 초과하지 못한다. 또 변사를 제외한 총경사본수는 규정폭에서 변폭을 뺀 후 inch당 규정경사수를 곱해서 얻은 값 이상이어야 하며, 변사를 제외한 총경사본수가 규정치의 100%미만 99%초과시 구매자는 부족경사본수의 백분율의 1/2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함을 이유로 제품인수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변사의 변수는 Sample의 그것과 일치하거나, Sample이 없는 경우에는 해생산공장의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매필의 양단말 2마되는 부분의 inch당 위사수는 규정치에 근사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부분의 허용차는 -5%, +7%를 초과하지 못한다. Inch당 위사수의 평균치는 규정치 이상이어야 하며, 평균치가 100%미만 97.5%초과시 구매자는 부족위사밀도의 백분율의 1/2을 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결함을 이유로 제품의 인취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매필의 중량허용차는 규정치의 -4%, +6%를 초과하지 못하며, Bale의 그것은 -2.5%, +4%를 초과하지 못한다. 또 중량 평균치는 규정치의 0.75%, +2%를 초과하지 못하며, 평균치가 99.25% 미만 98.5%초과시 구매자는 부족중량의 백분율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함을 이유로 제품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표 1> Specification G.의 개요

구 분	항 목	허 용 범 위		배 상 청 구(Claim)	
		개 별 측 정 치	평 균 치	제 기 조 건	청 구 금 액
제 품 인 도 량	과부중량(마)	평균 Bale량의 $\times 1/2$ 이내 (단 계약량이 10,000마이상 일 때에는 계약량의 $\pm 5\%$ 이내)		-	-
제 품 규 격	폭	-1% +2% 이내	규정치이상	평균치 ; 100%미만 99.5%초과	부족폭백분율 의 2배이하
	경사밀도(본/in)(변제외)	-3% +4% 이내	총경사본수= 규정폭 $\times$ 규정 밀도이상	총경사본수; 100%미만 99%초과	부족경사본수 백분율의 1/2 이하
	변 사 변 수	Sample과 일치(단, Sample이 없는 경우 생산공장 표준과 부합)		-	-
	위사밀도 (본/in)	-5% +7% 이내	규정치이상	평균치; 100%미만 97.5% 초과	부족위사밀도 백분율의 1/2 이하
	중 량	필 -4% +6% 이내	-0.75% +2% 이내	평균치; 99.25%미만 98.5%초과	부족중량백분 율이하
	Bale	-2.5% +4% 이내			

주; 표 1중 공란은 Spec. G.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 임.